

제343회 임시회
2015.10.21.(수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교육위원회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10.21.(수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5년 10월 02일

다. 회부일자: 2015년 10월 05일

라. 상정일자: 2015년 10월 19일

(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관리국장 박종철)

가. 제안이유

여성공무원에게 생리기마다 무급으로 부여하는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,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보호와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자기계발 시간 마련 및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여성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매월 1일의 보건의휴가를 유급화함
(안 제19조제2항)
- 2)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휴가 5일 신설(안 제19조제3항)
- 3) 장기근속 지방공무원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신설(안 제19조제7항)
 - 가)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
 - 나)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10일
 - 다)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
- 4)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1일 신설(안 제19조제8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반기환)

-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여성보건의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고,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보호와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자기계발 시간 마련 및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여성공무원에게 무급으로 부여하는 매월 1일의 여성보건의휴가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,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하였던 바, 이는 여성공무원들의 권익신장과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, 모성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 - ※ 전국현황(여성 생리 보건의휴가 1일 유급 부여: 광주, 강원)
 - ※ 전국현황(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휴가 5일 부여: 없음)

○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②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③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 등 총 4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함.

- 전국 17개 시·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·도교육청에서 장기재직휴가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, 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다만,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타·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※ 전국현황(17개 시·도교육청)

구 분	0일	10일	15일	20일	25일	30일	40일	45일	50일
기 관	전북	경기	강원	세종 경북	전남	대구, 인천 광주, 울산 충남	경남 제주 충북	서울 대전	부산

○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음.

-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, 가족 간 화목 도모와 국가관 확립,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좋은 취지로, 경기도교육청 및 23개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중에 있고, 최근 자녀가 입영하는 경우 부모가 동행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바, 적정하다고 사료됨.

※ 전국현황(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1일 부여: 경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수정가결”

7. 수정안 요지

○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5. 10. 19. / 정영수 의원

○ 수정이유

- 안 제19조7항의3 휴가일수 총 40일은 타·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너무 많다고 사료되므로 ‘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’을 ‘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’로 하여 장기재직휴가의 휴가일수를 총 30일로 수정하고자함.

○ 수정내용

- 안 제19조제7항3호에

“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” 을 “재직기간 30년 이상: 10일”
으로 한다.

8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10. 첨부서류: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 등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1. 수정이유

안 제19조7항의3 휴가일수 총 40일은 타·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너무 많다고 사료되므로, ‘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’을 ‘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’로 하여 장기재직휴가의 휴가일수를 총 30일로 수정하고자함.

2. 수정내용

- 안 제19조제7항3호에

“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” 을 “재직기간 30년 이상: 10일”
으로 한다.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여자공무원”을 “여성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제19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을 따른다.

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
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10일
3. 재직기간 30년 이상: 10일

-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)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당시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를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</p> <p>제19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여성공무원</u>----- ----- ----- . <단 <u>서 삭제</u>></p> <p>③ <u>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을 따른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10일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3.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</p> <p>⑧ <u>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	<p>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</p> <p>제19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여성공무원</u>----- ----- ----- . <단 <u>서 삭제</u>></p> <p>③ <u>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을 따른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10일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3. 재직기간 30년 이상: 10일</p> <p>⑧ <u>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여자공무원”을 “여성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제19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을 따른다.

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
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10일
3.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

-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)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당시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를 적용한다.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법[시행 2015.5.18.] [법률 제13292호, 2015.5.18]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[시행 2014.11.19.] [대통령령 제25751호, 2014.11.19]
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, 휴직기간·정직기간·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

1. 임신·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(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,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)
2.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
3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

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~ ⑥ (생략)